

03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고찰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차장,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 관행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비판이 있다. 대부분의 보도가 수사단계를 다루는 것에 치중하고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는 등한시한다는 것이다.¹⁾ 수사기관발 정보에 크게 의존하다보니 유죄를 속단하는 보도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범죄사건에 대한 속도감 있는 보도는 피의자에 대한 공분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후일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실이 보도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당연히 최초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피의자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형사사건의 결과가 보도될 필요성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는 범죄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바로 추후보도청구권이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7년에 제정·시행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을 근거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1982년에 시행된 오스트리아 「언론매체법」(Mediengesetz) 제10조의 형사절차의 경과에 관한 추후보도(nachträgliche Mitteilung)에 관한 내용을 계수한 것으로 평가된다.²⁾

추후보도청구권은 도입 이래 범죄보도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수의 약 3.5%를 차지한다.³⁾ 본고에서는 이러한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요건을 살펴봄으로써 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실무에서 대두된 쟁점을 검토하며 개선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1) 노성호·이기웅 (1996).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연구총서 96-08).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60-61.

2) 박용상 (1987). 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87년 겨울호(통권 25호), p.67.

3) 언론중재위원회 (2023). <2022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p.20.

2. 추후보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요건

1)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추후보도청구권(제17조)은 모두 언론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반론권 수단이다. 이들을 비교하면, 먼저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그 증명책임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⁴⁾ 실무적으로 어떤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실 인정 문제는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반면 추후보도청구 사건에서는 보도내용의 허위성 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보도에 적시된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⁵⁾ 헌법재판소도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이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되어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⁶⁾ 정정보도청구권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보도에 대해서는 행사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실무상으로는 수사 중인 사건을 다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가 청구된 경우 일단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이후 수사결과를 추후보도 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⁷⁾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 개념보다는 형사절차가 종결된 시점에서 보도내용을 업데이트한다는 측면으로 추후보도의 기능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7호). 정정보도와 달리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도 존재하나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⁸⁾ 표현양식 또한 “(피해자는) ~라고 알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5)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 등 종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0조).

6)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결정.

7) 2021서울조정1236·1237·1238/1239·1240·1241. 이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의 주요내용은 당해 연도 언론조정 중재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대법원 2009. 1. 15.자 2008그193 결정.

려(또는 밝혀)왔습니다”라고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죄판결 등 사실에 관한 주장이 담기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명백히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추후보도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발급한 공문서로 확인된 무죄판결 등 사실을 언론사가 밝히는 것이므로 높은 신뢰성이 담보된다. 따라서 추후보도청구권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포섭하자는 견해⁹⁾는 반론보도청구권과 확연히 구별되는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를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제척기간에서도 다른 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와 달리 추후보도는 범죄 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절차의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특히 재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보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다.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 제척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만으로는 불충분한 피해구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4항). 따라서 피해자는 각 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있다면 다양한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언론매체법」에서는 “추후보도는 그 내용이 요구된 권리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제10조 제2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의 국내 도입 당시 정간물법에서도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관련 조문이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으로 흡수되며 “추후보도에 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 제2항)라고 법문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개정된 문구가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더욱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 추후보도가 무죄판결 등 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

9) 윤진희 (2019).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18권 3호, pp.130-131.

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오스트리아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독일에서도 민법 제 823조 및 제1004조에 따라 도출되는 범죄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¹⁰⁾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추후보도는 형사범죄에 대한 합법적 보도 이후 법원 판결 또는 검찰청의 결정으로 다른 관점에서 결론이 나고, 보도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가 지속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는 항상 부정확할 위험이 있고,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자신에게 유리한 형사절차 결과에 대한 추후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 권리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이룬다면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서는 추후보도는 원래부터 위법한 보도를 정정(Richtigstellung)하는 것과는 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언론사에게 최초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의 입장(“오늘날의 시점에서 당사는 기존 보도내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을 보도하도록 강제한 고등지방법원의 판결이 「기본법」(Grundgesetz) 제5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추후보도의 내용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언론사에게 보도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정정보도에 준하는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청구권의 한계를 밝힌 것이 판례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유사하게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일 뿐이지,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며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추후보도의 내용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로 종결된 사실”이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후보도문 중 “이로써 법원을 통하여 A 상사가 E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라는 부분은 배제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¹¹⁾

물론 기존 보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했다거나, 실제 없었던 수사기관

10) BVerfG, Beschluss vom 22.06.2017 – 1 BvR 666/17.

11)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9나2019090 판결.



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의 내용에 더해 정정보도 성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허위사실이 보도된 경우 추후보도에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정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례가 있다.¹²⁾

본고에서는 한국의 추후보도청구권의 근거법으로 언론중재법을 소개했으나 재판실무상으로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추후보도를 구하는 청구도 인정되고 있다.¹³⁾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17조 제3항),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민법」 제764조에 따른 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도가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¹⁴⁾ 따라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공익성 + 진실성 or 진실상당성)¹⁵⁾가 인정될 경우 청구가 기각되는 구조에 놓인다.¹⁶⁾

¹²⁾ 광주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합10162 판결(제1심); 광주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2 판결(제2심).

¹³⁾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70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합10162 판결(제1심); 광주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2 판결(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¹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¹⁵⁾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¹⁶⁾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36359 판결.

2) 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 및 행사요건¹⁷⁾

추후보도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란 형법 및 기타 특별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상 조치란 수사기관의 입건, 내사, 영장 청구 및 발부, 피의자 소환, 피고소, 피고발 등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조치를 의미한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암시된 것이 된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여지가 클 것이다.¹⁸⁾ 또한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경우 그러한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도는 당연히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 중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제시하며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확인된다.¹⁹⁾

위 사건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협회의 규정을 어기고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 지시를 하여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증명서의 허위성 판단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나 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 언론이 행하는 비판 보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허위 증명서라는 표현을 의견표명 내지 평가로 보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추후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추후보도청구 사건에서는 근거법에 관계없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사실의

17)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을 핵심만 추린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pp.1173-1177. 참고.

1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7가합111367 판결.

적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특정 범죄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기사에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을 문제 삼아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추후보도청구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 여부를 이처럼 엄격하게 따진다면 피해구제가 상당히 요원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범죄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보도될 경우 이를 접한 사람들은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보도는 이러한 인식을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나마 교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보도를 청구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결이란 판결의 경우 그것이 확정된 경우를 뜻한다. 검경의 처분에 대해서는 실무상 처분이 있는 시점으로 보면 될 것이다. 하급심 판례들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⁰⁾ 이와 별개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전술한 판시에서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는 표현은 사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후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등을 받은 사실만 있으면 족하고, 보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앞선 법리를 내세워 특이한 판단을 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 원고는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상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후 원고는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다룬 기사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¹⁾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심이 진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가합11760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353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3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2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648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373, 2016가합380(병합) 판결.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3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282 판결.



행 중인 사실을 보도한 것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무혐의처분에 대해 고소인의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된 데 대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따른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도 있다.²²⁾

추후보도청구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동일한 죄목이라도 가분적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보도를 구할 수 있다. 일례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횡령액으로 약 140만원만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은 액수에 관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²³⁾

한편 형사절차 종결의 의미와 관련해, 검경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불복절차 계속 중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소기간 중에 있거나 상소심 계속 중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내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에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혼선

22) 2019서울조정1507.

23)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373, 2016가합380(병합) 판결.

이 있는 것 같다.²⁴⁾ 그러나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리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확설이 있고,²⁵⁾ 하급심 판례 중에도 경찰의 내사종결처리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²⁶⁾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 중에도 검찰의 진정내사 사건에 대한 각하처분(증거불충분 등), 경찰의 내사종결(무혐의)을 근거로 청구를 인정한 경우가 확인된다.²⁷⁾ 다만 경찰의 내사중지 처리가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사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²⁸⁾

세 번째 요건은 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당사자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당사자적격 여부를 반론보도청구권에서 요구되는 개별적 연관성보다는 다소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⁹⁾ 일반 독자가 당사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 가능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를 보면 추후보도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별적 연관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³⁰⁾의 취지 등을 그대로 따르는 양상을 보인다.³¹⁾ 즉,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은 청구에 대한 거부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거부사유가 준용되므로(언론중재법 제17조 제3항), 추후보도청구가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된 추후보도의 핵심 내용(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 경위와 이유 등)이 원보도를 한 언론사를 통해 후속보도 된 경우 추후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³²⁾

24) 2021서울조정316, 2021서울조정317(병합).

25)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p.117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3가합34520 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39805 판결(제2심)

27) 2015경기조정58, 59; 2014경남조정5~8; 2009부산조정11; 2008충북조정1.

28) 2008부산조정11.

29) 박용상 (2008) 앞의 책. p.1176.

3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2095, 2020가합2101(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2088 판결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35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합61499 판결.

이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을 위한 주요 요건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무죄판결 등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여기서 종결 사실을 안 날이란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되었음을 인지한 날이 된다.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면 「민법」 제764조에 기한 추후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추후보도 청구권에 관한 최근 이슈 및 입법적 개선과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두 가지 현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2021년 검경 수사관 조정으로 도입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및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각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이와 별개로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에 따른 재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무죄판결 내지 무혐의처분과 동등한 수준의 종결 사실로 보아 추후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나 실무기관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를 보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기한이 지났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³³⁾와 불송치 결정을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의제하여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³⁴⁾가 혼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당시에 실무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었다.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33) 2022서울조정1750·1751.

34) 2022강원조정1/2; 2021서울조정2931; 2021서울조정1226·1227·1228.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 또는 1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이 가능했다(「검찰청법」 제10조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 역시 불복절차를 거쳐 번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실무에서는 피신청인 측이 항고 등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추후보도의 게재를 권유해 왔다. 만약 증명이 된 경우라면 각하결정을 내리기보다 불복사건이 기각되어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보도를 게재하도록 했다.³⁵⁾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는데 항고기각 결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추후보도를 다시 청구해 조정이 성립한 사례도 있다.³⁶⁾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³⁷⁾

추후보도청구 요건과의 관계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크게 문제되는 이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달리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피해구제가 무기한 지체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제1조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언론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함을 고려하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후보도청구권을 즉시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추후보도가 게재된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6.4%, 이의신청 사건 기소율은 2.11%에 불과하다(검사의 재수사 요청률은 3.72%, 재수사 요청 사건 기소율은 5.84%).³⁸⁾ 위와 같이 매우 낮은 가능성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낮은 확률이지만 불송치 결정에 따른 추후보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후속보도하면 될 것이다.

이상으로 불송치 결정 관련 쟁점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두 번째 쟁점인

35) 2020서울조정284·285/286·287.

36) 2022서울조정1804.

37) 2022경기조정90/91; 2021서울조정1172·1173·1174·1175.

38) 대검찰청 (2022. 2. 4.).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보도자료.



행정처분보도 피해자에 대한 추후보도청구권 부여 필요성으로 넘어가겠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논문으로 한차례 논의를 전개한 바 있고,³⁹⁾ 이후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된 바 있다.⁴⁰⁾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즉 범죄보도의 피해자가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표 1> 추후보도청구권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 또는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p> <p>-----</p> <p>-----</p> <p>-----</p>

39) 이예찬·이재진 (2020). 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 논의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2권 3호, pp.263-290.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7조 제1항.

현행 규정상으로는 아무리 중한 범죄혐의가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형사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보도된 식품업체의 경우이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명령 취소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⁴¹⁾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을 밝힌 보도는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된 바 없어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직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시 의회에서 제명되었다고 보도된 기초의회 의원이 신청한 사건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제명의결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자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는데 중재부는 신청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⁴²⁾

두 사건 모두 보도대상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 초래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도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특이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 및 부검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서는 사망원인이 현대의학으로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위 부검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처럼 추후보도의 내용이 형사절차의 종결사실을 다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은 성립되었다.⁴³⁾

41) 2019서울조정1704, 2019서울조정1705, 2019서울조정1706, 2019서울조정1707, 2019서울조정1708(병합).

42) 2017서울조정678·679.

43) 2010제주조정13·14.

불송치 결정 관련 추후보도청구권 인정 여부가 중재부 재량에 달린 문제인 데 반해, 형사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범죄보도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1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무산된 아쉬움이 있다. 기존에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던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행정처분보도 피해자에게도 범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 형태로 종결된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⁴⁴⁾

4. 나가며

202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추후보도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은 88.9%로 다른 청구유형의 사건(정정 66.3%, 반론 70.1%, 손해 66.2%)보다 월등히 높았다.⁴⁵⁾ 언론사들이 추후보도청구권을 범죄보도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피해회복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추후보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달리 무죄판결 등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한 몫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한 별다른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관행적으로 되어 온 측면도 있어 보인다. 청구권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나 실무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을 둘러싼 논쟁거리가 많아야 할 것이지만 추후보도청구사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추후보도청구권과 관련해 최근 떠오른 이슈들은 기존의 안정된 실무상황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외부요인과 기존 청구권으로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사건유형의 등장으로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중재법 자체는 2009년 개정(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조정대상 매

44) 언론중재위원회는 본 장에서 다룬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 해석과 실무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후보도청구 요건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활동기간: 2023. 6. 19. ~ 7. 31.). 보고 작성 이후 확정된 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① 불송치결정 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재수사요청 기한)을 지난 때 또는 검사가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 없이 불송치기록을 반환한 경우 해당 일을 형사절차의 종결시점으로 보고, ② 형사처벌과 연결된 행정처분보도 관련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예비심리(본안전심리)를 통해 청구를 배척하기보다는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의사 등을 확인하여 본안심리를 개최함으로써 적절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이 실무처리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45) 언론중재위원회 (2023).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p.18.



체에 포함됨) 이래 큰 변경이 없었으나 타 법 개정 및 다양화된 사건양상이 실무상 고민거리를 안겨준 것이다. 대부분의 추후보도청구사건이 언론분쟁조정절차에서 해결되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근본적으로는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입법적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언론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 법은 정체되지 않고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현실과 부딪히며 변화해 나갈 때 그 존재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